

건축시 준수사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께서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준수사항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을 안내하오니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가 취소, 공사중지 또는 사용승인 불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층의 경우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각 입구는 단차가 없도록 시공바랍니다.
- 건축후퇴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환경 및 접근성 확보, 향후 시설물 설치 등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퇴부분 시공시 인접보도 및 인접대지경계선과 동일한 높이 및 동일재질(문양)로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후퇴선의 경우 그 경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경계석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24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16조의3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건축법 제11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반드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경기침체로 지역의 건축자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자재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공사시에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금연이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신축시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기준(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소화기: 세대별 1개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사진 등 설치여부 확인가능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세문의 : 달서소방서 ☎625-0119 / 강서소방서 ☎601-4638)
- 가설울타리는 신품 RPP 팬스 등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미관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방지시설을 적정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인근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른 아침 소음 유발 공사 및 주말, 공휴일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시간을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외부단열재, 판넬, 마감재 사용시에는 가급적 난연성 이상 성능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화재에 취약한 외단열마감(드라이비트)의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치시에는 계획단계에서 소음, 열기 등을 감안한 설치 위치를 고려하고, 냉·난방 환기시설(에어컨실외기 등)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경계측량의 실시】** 공사 착공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당해 부지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

고, 측량시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입회하도록 하고 건축물 위치지정 등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발견 신고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 667-2194)
3. **【기존 건축물의 해체】** 기존 건축물 철거시에는 해체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를 첨부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하며(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건축공사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송전선로(철탑, 전력선, 지중케이블) 근접 작업】**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설치, 비계발판 위 일반 근로자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할 시에는 정전고장, 안전사고(감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사전 협의후 절연용 방호구(건축용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하게 시공(건축 신·증축, 굴착, 점용)하여야 합니다.(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배전운영실(☎350-2269, 가공송전☎ 210-3727, 지중송전 ☎ 210-3730, 방호관설치문의 국번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 ☎ 053-550-2221(신청), 2353(시공))
5.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법령 준수】** 소음·진동을 발생케하는 특정공사(항타기 등 사용)의 경우 공사개시 10일전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개시 3일전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건축공사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 667-2592)
6.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건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7. **【공사장 안전조치】** 공사장(철거공사 포함) 주위에 위해방지시설(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시설, 가림막, 흙막이, 배수로설치, 인근 대지의 위험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간선도로변 공사시 가설울타리 등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미관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지하에 묻힌 상·하수관, 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반드시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8.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등은 착공 30일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09-0585)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접수증을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667-6361)

10. **【공사장 주변 관리】** 공사 또는 차량진입으로 인해 점자블럭, 자전거전용도로, 보차도경계석, 인도블럭, L형측구, 하수관 등 공공시설물이 침하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규정에 맞도록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공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즉시 반출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배수설비 관련】** 배수설비 설치시에는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정화조 설치시)가 시공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시 관련 자격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수관로 연결부는 정밀시공 및 청소 등을 하여 우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오수 분리지역에서의 배수관로는 반드시 각각의 우·오수관 맨홀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설과에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2. **【정화조 설치】** 정화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전에 정화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정화조 설치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환경보호과 ☎ 667-2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산재·고용보험의 가입】** 주택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대수선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14. **【액화석유가스 사용전 검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서 발급하는 도시가스공급확인원을 제출하여 주시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또는 임시사용)하는 준공검사대상건축물(단란주점, 유흥주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신청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588-0015~21)
1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150㎡초과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시공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달서구청(홍보전산과 ☎ 667-2474)에 사용전검사를 득하여 사용전검사필증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건축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일 경우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건설과 ☎ 667-2876)
17. **【취득세 납부】** 건축물사용(임시사용 및 존치기간이 1년이상 되는 가설건축물 포함)승인서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세무과 ☎ 667-2381)
- ※ 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문의 : 관할 등기소)
1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사항】**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주택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공자는 준공 30일전까지 적합확인 건축자재 사용에 관한 서류(실내재료마감표, 건축자재 시험확인서 등)를 환경보호과(☎ 667-259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급수공사 관련】** 급수공사시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급수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사업소 ☎ 670-3510)

20.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관련】** 공사시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에도 도시경관을 해치는 매매 및 임대 홍보용 불법 현수막 및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간판표시계획서를 첨부하여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 후 설치하여야 하며, 적용 대상 건축물, 기타 가로 간판 및 돌출간판에 대한 종류, 위치, 크기 등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도시재생과(☎ 667-2844)**로 문의 바랍니다.
2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면적이 660㎡ 이상으로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토지정보과 ☎ 667-3075)**
22.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변경 등】**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변경(증가,감소)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택으로 변경은 대수선과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리구 지적과에서 건물새주소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전까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설치로 표준형 건물번호판의 크기로 인한 가시성 저하 완화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지정보과 ☎ 667-3104)**
24. **【태극기꽂이 및 게시판 설치】** 다가구주택 신축시 가구별 태극기꽂이 및 게시판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우편함의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축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6. **【절수설비 설치】** 수도 설치시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7. **【상가 입구 단차 제거】**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 교통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각 상가 입구는 단차제거 및 경사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8. **【지역업체 생산 건축자재 사용 권장】** 최근 경기침체로 지역의 건축자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자재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공사시에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합니다.
29. **【건축물 철거 작업시 유의사항】** 건축물 철거시에는 주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동 등으로 담장 및 벽 등의 균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거전에 주변상태 등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수집 보관하여, 철거로 인한 분쟁 및 민원이 최소화될 수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샌드위치패널 시공 관련】**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샌드위치패널이 당해 제품의 품질시험 성적서 및 납품확인서와 동일한 성능·규격의 제품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수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 확인을 서류상이 아닌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임시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정에 따른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공사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2. **【부동산등기 관련】**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기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그 등기(건축물표시변경 등기)를 신

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등기 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범죄예방 건축기준 및 신축원룸 방범인증제 관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은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룸 신축시부터 방범시설물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범죄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는 “신축원룸 방범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룸방범 인증제 평가항목” 90점 이상 획득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달서경찰서 생활안전계 ☎ 662-6811, 성서경찰서 ☎580-0345)
34.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 공사감리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행위로 인해 지하수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안전상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5.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관련】** 도시가스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철거 등 공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등 의무화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가. 건축물 증축·개축·철거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
 - 나.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 잔류가스 제거 등 안전조치 협의서 작성 이행
3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건축물 3천㎡(연간 5천㎡)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연간 1만㎡)이상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므로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803-4663)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7.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 함.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38.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 확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온돌의 설치기준)」에 의거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한 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전기안전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용승인 신청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안전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603-3000)
40. **【실내건축 구조 및 재료 준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은 실내건축 구조 및 시공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내부 마감재료, 안전유

리, 손끼임 방지장치 등)

41. **【시특법 제1,2종 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등의 제출)에 따라 제1종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5만㎡ 이상 등), 제2종시설물(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용승인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통하여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승강기 설치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하며, 건축허가 시 **승강기 설치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승강기·삭도공사업)를 가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건설공사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3.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법」에 의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달서구청(건축과 ☎ 667-2946)에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달 서 구 청 건 축 과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당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화재 등 재난예방 추진에 대한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대구달서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여기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신축공사장, 2018년 12월 서울 청담동 신축공사장 등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 위험성을 공사장 관계자 등 관리주체가 중심이 되어 사소한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방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협조 바랍니다.

【협조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불티 비산방지 조치 철저
- 공사현장 주변 불필요한 전기시설 등 전원 차단 철저
-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쉬운 가연물을 안전조치 없이 다량으로 방치금지
- 현장 내 이동식 석유난로 및 모닥불 등 화기취급 금지
- 기타 공사현장 안전수칙 준수 철저 등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구달서소방서 소방공무원들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화재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오니 자체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2. .

대구 ○ ○ 소방서장



산재 ·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

1.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공사

- 산재보험 : 모든 건설공사
(18.7월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대상)
 - 고용보험 : ① 건설면허업자 : 모든 건설공사
②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 :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 합계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산재·고용보험 보험가입자 및 신고방법

- 보험가입자
 - ▶ 건축주 직영공사 : 건축주
 - ▶ 도급공사 : 원수급인
- 신고방법

보험가입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관
건설면허업자인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①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 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② 보험료신고서 →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수급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
건설사업자이나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산재보험 일괄적용 → 고용보험 개별적용 ※ 건설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 ※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산재 일괄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현장별 개별신고	【산재보험】 ①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 '18.7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보험】 ① 건설업 및 별목업 성립신고서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② 보험료신고서 →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70일 이내 공사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수급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 산재·고용보험 개별적용	① 건설업 및 별목업 성립신고서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② 보험료신고서 →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70일 이내 공사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3. 산재·고용보험에서 드리는 혜택 및 미신고시 유의사항

○ 가입 시 혜택

- ▶ **산재보험**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

- ▶ 산재 ·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담 및 문의 안내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사이버 고객상담

산재 없는 대구 만들기 당부 서한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 안전 및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업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감축을 목표로 산업재해·자살·교통사고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매년 1,000여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매년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우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업주 여러분!

대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구 관내 사업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사항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둘째, 기계·설비 안전점검 생활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의 설치, 유지·보수 할 때 전원차단 및 스위치 잠금장치 설치

셋째,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넷째,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한 건의 재해도 없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장근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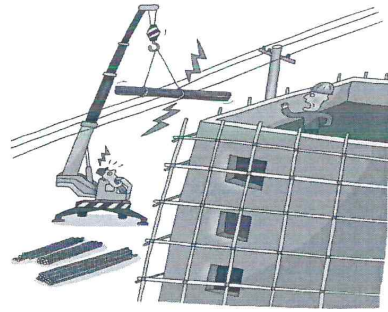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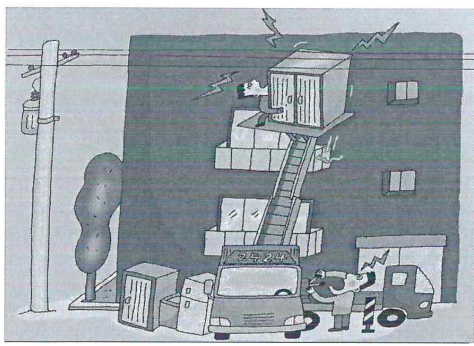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서문교

전기 안전사고 및 정전예방을 위한 안내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전력사업의 협조와 이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전에서는 정전 없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보수 및 안전점검 등 각종 정전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전력설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인의 안전 부주의 또는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가 사다리차 혹은 크레인을 이용한 이삿짐·화물 운반·옥외광고 설치중 전력선과 접촉되어 감전사고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예방대책을 안내드립니다.

감전 및 정전사고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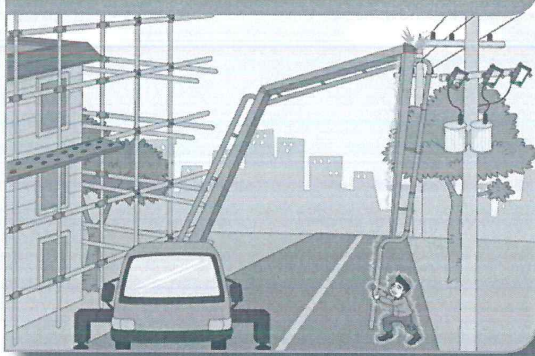


- 전력선은 피복된 전선일지라도 근접 또는 접촉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 전력선 근접작업시 **충분한 안전거리 반드시 확보** : 상방 2.5M, 측방 1M 이상
- 또한, 전력선 근접작업시 **반드시 한전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국번없이 123, 남대구지사 운영실 053-630-2268~9)
- 전력선 근접 단시간 소규모 작업현장(이삿짐작업, 현수막 설치/철거, 건물외벽 도색작업, 건축·건설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는 경우)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고객이 요청하고 당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건축용방호관 시설**은 **한전부담으로** 시공합니다.

4. 아울러 상기 사유로 정전 및 전력설비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 100조에 의거 형사적 조치가 따를 수 있사오니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된 전선”도 위험할 수 있으니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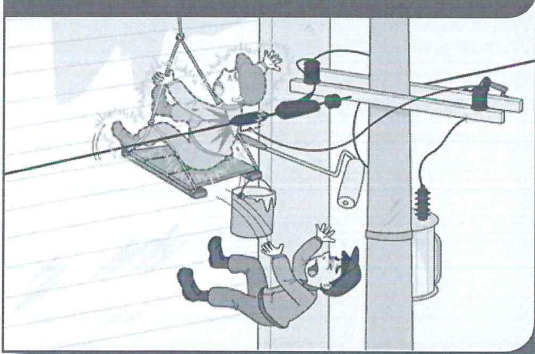
중장비 사용시 전력설비 접촉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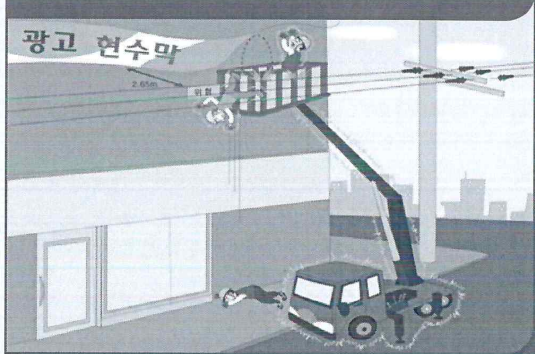
크레인 작업시 전력설비 접촉 주의



건물도색 작업시 전력설비 접촉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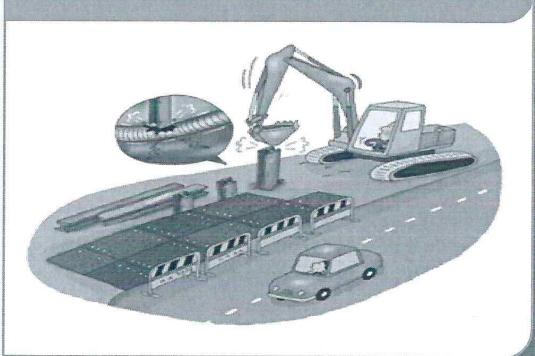
광고 현수막 설치시 전력설비 접촉 주의



이삿짐 운반시 전력설비 접촉 주의



굴착시 지하매설물 확인 철저



전력선 주변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있으면 반드시
☎123 한전에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 받으세요.

●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전기위험신고 및 문의는 국번없이 ☎123